

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-9호
2020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0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0년 2월 17일
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 계획

근무부서	채용분야	직 급	선발인원	근무기간	직무내용
처인구 보건소	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2명	1년 (주35시간)	■ 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대상자 군 분류 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,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■ 보건소 내 외 자원 연계를 통한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■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주민 건강행태 개선 건강증진사업

2.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

○ 채용자격기준

※ 적용기준일 :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

▷ 공통 응시자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【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▷ 응시연령

➡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▷ 거 주 지 : 제한없음

▷ 자격기준 [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]

※ 경력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직무분야	자 격 기 준
간호사 (기흥구보건소)	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필수 자격요건 : 「의료법」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및 자동차 운전면허 (2종 보통 이상) 면허증 소지자 ○ 관련분야(경력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(의료기관 포함) 등에서 간호 분야 업무 경력 ※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

※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 및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별표5의3에 따라 일반
 (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
 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○ 시험방법

▷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
▷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

- 평정항목 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*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*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*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*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 *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▷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(추가합격자)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불합격 기준
 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로” 평정 또는
 - *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

○ 채용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(합격자발표)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‘20. 02. 17.(월) ~ 02. 27.(목)	‘20. 02. 25.(화) ~ 02. 27.(목)	‘20. 03. 05.(목) 전 · 후	‘20. 03. 12.(목)	‘20. 03. 19.(목) 전 · 후

- ▷ 접수방법 : 직접 방문(인터넷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또는 등기우편 접수

<등기우편 접수>
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 - ▶ 주소 : [우17019]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 용인시청 인사관리과
-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/동봉
 - ※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불가
- 우편봉투 겉면에 ‘2020년 제00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’ 표기
-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
 - ※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 - ※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

<방문접수>

- 접수장소 :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사팀(시청 5층)
- 접수시간은 평일 09:00~18:00, 토·일요일·공휴일
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.
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공고 확인 : 용인시청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채용/시험정보란
-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-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

○ 제출서류

<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>

① 응시원서 1부(소정양식)

- 붙임1)

- 응시수수료(용인시 수입증지) : 5천원

- ✓ 수입증지 판매처 :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
- ✓ 단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
(「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7조)
- ✓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

② 이력서 1부

- 붙임2)

- ✓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
▶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

③ 자기소개서 1부

- 붙임3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

- 붙임4)

⑤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

- ✓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✓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- ✓ 붙임9)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
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⑥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- 1)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
- 2)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

(주의사항)

- ✓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- ✓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.
- ✓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,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)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
- 붙임6)
- ✓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
- ✓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, 미제출 시 불인정
- ✓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/ 미제출 시 불인정
- ✓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⑦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[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(<http://www.nhis.or.kr>) 또는 1577-1000번]

- ✓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⑧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⑨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- 붙임5)

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- 붙임7)

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- 붙임8)

✓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

✓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
Ⅲ. 기 타 사 항

○ 보수 및 근무시간

▷ 근무기간 :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.

▷ 연 봉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, 하한액의 120%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✓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 제3항)

▷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 등

▷ 복리후생 :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적용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약정기간	연 봉 액		週당 근무시간
				하한액 (기준액)	상한액	
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2명	1년	25,142천 원	41,937천 원	<u>35시간</u>

○ 응시자 유의사항

- ▶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▶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▶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.
- ▶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▶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▶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▶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▶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(www.yongin.go.kr)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	인사관리과 인사팀 (031-324-2113)
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	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(031-324-4832)